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326906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32690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124751 판결

###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석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지민

변론종결 2022. 6. 8.

판결선고 2022. 8. 17.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124751 판결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가 2019. 12. 19.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2019. 12. 19. 접수 제501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영, 판사 윤남현, 판사 장래아